

[illegible]

“발명교사의 전문성 제고, 수업역량 강화, 교육품질 제고”

●● 추진 목적

- ✓ 초·중등 학교교육에서의 체계적 발명교육과 교사의 발명교육 전문성 강화 유도 및 인증제 활성화를 통한 발명교육 저변 확대
- ✓ 우수 발명교사의 인력풀 구축 및 활용 통한 발명교육 질 향상

●● 응시 대상

- ✓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 21조, 「유아교육법」 제 22조에 의거 2급 이상의 교사 자격증 소지자* 및 소지에정자**

* 현직교사, 기간제교사, 퇴직교원, 장학사(관), 교감(장)

** 예비교사는 2급 인증 자격기준 통과한 후, 2급 정교사 자격부여 시 인증서 발급

●● 인증제 등급 및 등급별 역량 기준

등급	역량 기준
2급	발명과 지식재산에 대한 일반적 이해와 지식을 가진 교사로, 발명동아리 등 일반 학교에서 발명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발명교사
1급	발명과 지식재산에 대한 심화된 지식을 가진 교사로서, 발명교육센터·발명영재 교육기관에서 발명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발명교사
마스터	발명과 지식재산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가진 교사로서, 학생·교원·일반인을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지도하며, 발명교육 관련 연구 및 교육 컨설팅을 수행할 수 있는 발명교사

●● 등급별 응시기준

등급	필수항목		선택항목				검정 시험
	발명교육 이수실적 (누적)	발명교육 실무경력	발명대회 입상지도	발명교육 강의실적	연구, 특허 실적	비고	
2급	4학점 또는 60시간 (필수 : 집합교육 30시간 이상)	-	-	-	-	-	○
1급	연수 120시간 이상 (필수 : 집합교육 60시간 이상)	3년	5건	20시간	150%	2항목 충족	○
마스터	연수 180시간 이상 (필수 : 집합교육 120시간 이상)	7년	10건	40시간	300%	2항목 충족	1급 검정시험 통과자

※ 인정기간 : 최근 10년 이내 교육이수 실적 및 발명교육 실무경력

예) 2017년 인증제의 경우 2007. 1. 1. 이후 실적 및 경력사항



응시기준별 인정 범위

필수영역

응시기준		인정범위	증빙자료
필수영역	공통	※ 인정기간 : 최근 10년 이내 교육이수 실적 및 발명교육 실무경력	
	발명교육 이수실적	▶전체 이수 실적 중 등급별 최소 필요한 필수 집합연수 이수시간 - (2급) 30시간 이상, (1급) 60시간 이상, (마스터) 120시간 이상 포함되어야 함 - 원격교육이수 만으로는 인정 불가 ▶원격교육이수는 이수 시간의 50%만 인정 (예: 원격연수 60시간 이수 시, 발명교육 이수실적 30시간으로 인정)	
		① 특허청 발명교육센터 발명지도자과정 등 교원 직무연수 집합교육 ※ 국제지식재산연수원 http://iipiti.kipo.go.kr	▶교원인사기록 카드 또는 ▶해당교육기관 교육이수증명서
		② 시·도 교육청 및 시·도 교육청 위탁 발명교육 또는 발명영재 교육 집합연수	
		③ 한국발명진흥회 종합교육연수원 교원직무연수 또는 특허청·한국발명 진흥회 위탁 발명교육 또는 발명영재교육 직무연수 집합교육 ※ 종합교육연수원에서 실시하는 발명교원 직무연수과정 http://www.kipa.org/kipabiz → 사업공고 → 종합교육연수원 ※ 지역별 거점 교사대에 설치된 발명교사교육센터의 직무연수과정 http://www.ip-edu.net → 발명영재교육연구원 → 발명교사교육센터	
		④ 한국발명진흥회 원격교육연수원의 발명교육 또는 발명영재교육교사 직무연수 ※ 아이피티처 http://www.ipteacher.net	
		⑤ 특허청·한국발명진흥회 개발 표준교재로, 학부 및 대학원에서 2개 과목 4학점 이상 이수한 실적(C학점 이상) ※ 예비교사의 학점과 현직교사의 연수실적 연계가능 (1학점=15시간)	▶대학교(원) 성적증명서
	발명교육 실무경력	▶특허청 지정 발명교육센터(구, 발명교실)	▶시·도교육청 교육경력확인서
		▶시·도교육청 지정 발명영재학급, 발명영재교육원 ※ 「주와 부 발명교사」는 동일하게 인정하나, 강사는 불인정	
		▶일반학교 자체 발명반 및 교내 발명동아리 (50% 인정) ※ 1회성 캠프 교육은 불인정	▶학교장 교육 경력확인서
		▶특허청 청소년 발명기자단 운영위원 (50% 인정)	▶임명장 또는 해당 기관 확인서
		▶한국발명진흥회 원격교육연수원(아이피티처) 온라인 교원 직무연수 운영강사(Tutor) 활동 (50% 인정)	▶해당 기관 확인서

●● 선택영역

응시기준	인정범위	증빙자료
발명대회 입상 지도실적	▶ 중앙부처*, 시·도 교육청에서 주최한 발명대회 수상 * 대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, 대한민국학생창의력챔피언대회 ※ 중앙부처 주최 대회의 경우는 시·도교육청 예선대회 수상 실적 포함	▶ 결과공문 또는 ▶ 상장(원본대조필 및 지도교사 명시)
(외부기관) 발명강의 실적	※ 발명교육 강의실적은 교사, 학부모, 일반인 대상의 강의 ▶ 특허청 발명교육센터의 발명교육 또는 발명영재교육 교사(원) 집합연수 강의 ▶ 시·도 교육청의 발명교육 또는 발명영재교육 교사(원) 집합연수 강의 ▶ 특허청 및 한국발명진흥회에서 위탁한 대학 등에서의 발명교육 또는 발명영재교사(원) 집합연수 강의 ▶ 한국발명진흥회 종합교육연수원의 발명교육 또는 발명영재교육 교사(원) 집합연수 강의 ▶ 대학/대학원에서의 발명교육 또는 발명영재교육 강의 ▶ 발명교육기관(발명교육센터, 발명영재학급/교육원)의 강의 ※ 사이버튜터, 초·중·고등학생대상 강의 인정불가	▶ 해당교육기관 강의경력확인서
선택 영역	▶ 시·도교육청에서 인정 및 선정된 발명연구과제 ▶ 발명교육 연구(시범)학교 결과물※1인(70%), 2인(50%), 3인 이하(30%)	▶ 시·도교육청 연구 과제 선정결과 공문 및 결과보고서 1부
	▶ 특허 등록 건수 : 1건(100%) ▶ 실용신안 등록 건수 : 1건(100%)	▶ 특허증 ▶ 실용신안등록증
	▶ 한국연구재단에 등록된 KCI 학회지에 등재된 논문 - 1인(70%) - 2인(주저자/교신저자 50%, 공동저자 30%) - 3인 이하(30%)	▶ 별쇄본
	▶ 석사학위 (발명교육분야) : 150% ▶ 박사학위 (발명교육분야) : 300% ※ “발명교육분야” 인정범위는 인증협의회 심사를 통해 인정	▶ 학위증명서 ▶ 학위논문 1부
	▶ 전국교원 발명품 경진대회 수상 - 금상, 은상, 동상, 특별상(70%) - 장려상(50%)	▶ 상장 사본 (원본대조필)

●● 기타사항 (자동 인증)

응시기준	인정범위	증빙자료
1급	▶ 발명교육대상 수상자 1차 서류심사 면제, 검정시험 통과 시 1급 인증 (마스터 신청시 1급 검정시험 통과 필수)	인터넷 신청 접수 완료 및 증빙서류 제출 시
2급	▶ 대학원 발명교육 또는 발명영재 전공 졸업자 * 발명·지식재산 관련 교과목(표준교재 내용 포함) 9학점 이상 이수 시 2급 인증(교사자격을 가진 자에 한하여 졸업 후 발급)	



등급별 인증절차

1급·2급 인증절차

단 계	내 용	주 체	비 고
① 신청 / 접수	▶[공고] 검정시험 2개월 전 ▶[접수처] 발명교사교육센터(3개 교·사대)	한국발명진흥회/ 발명교사 교육센터	▶수도권/강원 : 한국발명 진흥회 발명영재교육연구원 ▶중부권 : 충남대 ▶영남권 : 부산교대 ▶호남권/제주 : 전주교대
② 인증조건 심사	▶[서류심사] 등급별 응시기준 충족 심사 ▶[검정시험] 대상자 통보 (거점대학 → 응시자)		
③ 검정시험	▶발명교사인증 검정시험	한국발명 진흥회	거점대학의 지정장소에서 검정시험
④ 발명교사 인증	▶합격자 발명교사로 인증 (인증서 발급) ▶발명교사인증 결과를 개인 및 시·도 교육청에 통보	특허청/ 한국발명 진흥회	
⑤ 인증관리	▶[관리] 취득자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▶[보수교육] 매 5년마다 연수 ▶증명서 발급 / 재발급 등 관련 업무 수행	한국발명 진흥회	※ 갱신주기 5년

마스터 인증절차

단 계	내 용	주 체	비 고
① 신청 / 접수	▶[공고] 검정시험 2개월 전 ▶[접수처] 한국발명진흥회 발명영재교육연구원	한국발명 진흥회	전 지역 한국발명진흥회 신청/접수/심사
② 인증조건 심사	▶[서류심사] 등급별 응시기준 충족 심사 ▶[검정시험] 대상자 통보 (발명진흥회 → 응시자)		
③ 검정시험	▶발명교사인증 검정시험 (1급)	한국발명 진흥회	거점대학의 지정장소 에서 검정시험
④ 심층면접	▶[면접심사] 발명교사인증협의회에 의한 심층면접 심사	한국발명 진흥회	사전 면접일자 통보
⑤ 발명교사 인증	▶합격자 발명교사로 인증(인증서 발급) ▶발명교사인증 결과를 개인 및 시·도 교육청에 통보	특허청	
⑥ 인증관리	▶[관리] 취득자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▶[보수교육] 매 5년마다 연수 ▶증명서 발급 / 재발급 등 관련 업무 수행	한국발명 진흥회	※ 갱신주기 5년

